

#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는 어떤 조직인가?

편집부



지난 6  
월 30일  
결성된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가

지난 8월 28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연구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는 앞으로 계육 생산에서부터 도계,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에 이르는 계육산업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 연구회는 정부와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칙〉

제정 2009. 6. 30.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계육산업 발전대책 연구회」라 칭한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2조(목적)

본회는 계육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계육산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 및 수출단계까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① 주요 활동

1. 계육산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체계화 등 기초작업 추진
2. Value Chain(종축, 생산, 유통, 가공·소비, 수출입 등)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연구
3. 계육산업의 국내외 동향, 중장기 전망, 정책대안 등 제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활동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학술발표회, 연찬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장 회원 및 임원

####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이나 간사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연속으로 3회 이상 불참시는 자동탈퇴 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과 본회와 관련된 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 제 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모임 참석,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가 있다.

#### 제9조(임원)

임원은 회장 1인, 간사 1인, 필요시 부간사 1인으로 하며, 종계·부화분야, 사육분야,

도계·가공분야, 유통분야, 수출분야, 정책분야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간사는 회장 및 간사를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부간사 부재시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업추진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 및 간사, 부간사 협의를 통해 내규로 정한다.

### 제4장 회의

#### 제13조(정기총회)

- ①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개정 및 임원선출
  2. 연구발표회 개최 등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임시총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분과위원회의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② 운영위원은 회장, 간사, 부간사, 각 분

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5장 재정 및 관리**


**제17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회원 당 가입비 5만원과, 회원 당 연 2만원으로 하며 가입비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시 납부한다.
- ③ 각종 모임시의 기본경비는 참석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수입 및 지출)**

수입과 지출은 부간사가 관리하며, 제3조 각 항의 사업추진을 위해 회장의 명을 받아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1. 이 회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사업추진 및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위원명단〉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운영위원	비 고
축산과학원	서옥석	과 장	회장	
축산과학원	채현석	연구관		
농협중앙회	이성재	부부장		
농협 목우촌	이강목	팀장		
농협 목우촌	김영현	팀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 부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종갑	지문위원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춘권	부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일한	경남 지회장		
(사)한국계육협회	김한웅	부장	부간사	정책
(주)하림	정문성	본부장		생산
(주)마니커	최충집	상무		사육
(주)체리부로	유석진	이사		도계, 가공, 정책
(주)하림	최장순	부장		수출
(주)하림	권정택	상무		종계
(주)하림	정호석	부장		정책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상희	실장		정책
유코브릿지	박준완	대표		도계, 가공
(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정책, 수출
(사)대한양계협회	김의겸	천안지부장		사육
(사)대한양계협회	류준희	천안지부장		정책
(사)대한양계협회	한정도	나주시부장		정책
(사)대한양계협회	한병권	이사		사육
(사)대한양계협회	조건택	육계대의원		사육
(사)대한양계협회	윤세영	안성지부장		정책
(사)대한양계협회	최길영	화성지부장		유통
(사)대한양계협회	김명기	파주시부장		유통
(사)대한양계협회	박태원	충남 지회장		유통
(사)대한양계협회	이상정	이사		유통
(사)대한양계협회	김국록	구미지부장		사육
(사)대한양계협회	방진우	부여지부장		정책
(사)대한양계협회	이성희	이사		사육
제주한라CFN	김승완	대표		수출
(사)대한양계협회	최성갑	종계위원장		종계
(사)대한양계협회	윤성희	이사		종계
삼화육종	이상배	이사		종계
한국원종	고도욱	대표		종계
(사)대한양계협회	안태엽	논산종계지부장		종계
(사)대한양계협회	김재홍	차장		
축산물등급판정소	이경웅	팀장		
농림수산물부	김영만	사무관	간사	
농림수산물부	임지현	주무관		
농림수산물부	홍기성	사무관		
농림수산물부	전관용	주무관		
(주)한국153농산	이석근	상무이사		유통
총	45명			